

# 2023년도 제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24.(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이성엽, 송수현, 김연희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8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33건(안전번호제2023-23597호~제2023-2432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23597호~23642호(순번 1번~46번)는 뮤지컬의 무단 녹화 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23643호~23656호(순번 47번~60번)는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물등을 판매중인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또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정보의 전송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3657호(순번 61번)는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캡처하여 정지화면 형태로 전송중인 게시물로, 실질적으로 영상물의 전부를 복제·전송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타인

의 상업적 저작물을 무단 전재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3658호~23670호(순번 62~74번)는 블로그 등을 통해 영상물 및 게임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23671호~24329호(순번 75번~733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3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구글 플레이' 게시 '앱'에 대해 '구글' 내 삭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3-4호)
- 회의결과: 심의 대상 앱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지의 심의의결(안)과 같이 심의 대상 앱의 '구글 플레이' 내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8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의 민원·권리자명 등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3-89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220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46번은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 블로그에 '○○○ ○○ ○○ ○○○ ◎', '◆◆ ◆◆◆ ◆◆◆◆◆'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및 밀녹, DVD, 인터넷 중계 영상, OST 파일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순번 1번 내지 46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는 점,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46번, 뮤지컬 영상 교환 및 판매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뮤지컬 관련 안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원인이고, 같은 게시자가 계속하여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46번은 삭제 및 전송 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A 위원: 정품을 저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볼 때 불법 판매일 것으로 생각은 되나, 정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저렴하게 판매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학교 같은 경우 서버를 학교에 두고 총량을 관리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 정확하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임. 불법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시정권고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있음.
- B 위원: 민원인은 판매자와 어떤 관계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파악하기로는 관련 없는 제3자임.
- B 위원: 권리자는 아닌 것이 맞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권리자나 총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
- B 위원: 민원인에게 불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는 없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권리자 측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신고된 업체와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음.
- A 위원: 실제로 구매해서 불법복제물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 본사등에 확인을 해서 불법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본인은 부결 의견임.
- C 위원: 우리 위원회에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으므



로 OSP 등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OSP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OSP에서는 판매자에게 관련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로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임.
- D 위원: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가결되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계속 가결되었음.
- A 위원: 게시물 상에는 정품 라이선스라고 명시해 놓음.
- 오진해 전문위원: 제품키를 판매해서 입력 시 정품과 동일하게 실행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보통 정품 라이선스라고 광고를 하는 것임. 교육용 라이선스나 불법 라이선스를 개별 판매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호원도 관련 게시물을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하고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한지?
- B, C, D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가결 3명, 부결 1명으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결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유튜브' 게시 영상물을 캡처하여 게시중인 사안 총 1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은 유튜브 채널 '△△△△'에 게시된 ▼▼▼▼▼ 관련 영상임. 심의 대상 게시물은 해당 영상을 정지화면으로 캡처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게시하고 있는데, 화면보다는 주로 자막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원저작물의 특성상 그 내용 전체를 대체 가능하도록 복제 및 전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의 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이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상업적 목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해당 영상물의 주요한 부분을 모두 무단 복제·전송하여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61번 유튜브 영상을 정지화면으로 복제·전송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유튜브 영상의 내용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이는데,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 B 위원: 내용은 공익 목적의 저작물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공익을 위해 제작된 저작물은 어떻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 B 위원: 원저작물에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유튜브 영상의 경우 상업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A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의 경우에도 광고가 없다면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 작성된 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게시물에서 광고 부착도 확인되었고, 원저작물과 똑같이 복제한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확실해 보임.
- C 위원: 해당 게시물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조금 편집했다고 해서 창작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 A 위원: 창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 D 위원: 구성, 편집 등을 본인이 결정해서 창작했으므로 저작물성은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예술성은 낮을 수 있지만 저작물성은 있다고 생각 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에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1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2번 내지 74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카페, 웹하드에 제공 중인 영상물 및 게임의 불법복제물 총 7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62번 내지 74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그럼 만장일치로 순번 62번 내지 74번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5번 내지 73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

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1,13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  
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  
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만달로리안'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7번은 웹하드  
에서 제공중인 드라마 '만달로리안'임. 2023년 3월 8일부터 디즈니플  
러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의 6화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제공  
중임.

(드라마 '나이트 에이전트'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1번은  
영화 '나이트 에이전트'로, 2023. 3. 23.부터 넷플리스를 통해 독점  
제공되고 있는 드라마 10부작 전체 회차를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헌트'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70번은 영화 '헌트'임.  
2022. 8. 10.에 극장 개봉한 최신 한국 영화 전체 123분 분량을 제공  
하고 있음.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75번부터 733번까지 총 1,220개의 심의대  
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5번부터 73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3597호~24329호(순번 1번~733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o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4호의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를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8.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